

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지원처 기간제근로자(실무원) 채용 공고

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에서 실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채용개요

○ 근무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처(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)

활용부서	수행업무	직급	채용기간	채용인원
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처	청사 보안유지(감시, 통제 등) 업무 등	실무원 (보안)	'23.06.26.부터 '23.08.31.까지	1

- * 해당 채용분야는 감시단속직 근로자로, 근무표(당일 07:00~익일 07:00 형태 격일 근무)에 따라 교대근무하며, 초과(야간포함) 근무의 경우 별도 수당이 지급됨 / 연중 24시간(공휴일 포함) 주·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
- * 채용기간의 경우, 정규 채용 결원 발생 등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 계약될 수 있음

2. 자격요건

○ 자격요건

- 연령 : 제한없음
- 자격 및 경력 : 제한없음
- 경비업법 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) 및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* 경비업법 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)

1.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 나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죄 다.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, 제305조, 제305조의2의 죄 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 마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죄
--

- 바.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
 - 나.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 7.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***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(결격사유)**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
9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0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10의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1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3. 근무조건

- 신 분 :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
- 계약기간 : 2023년 6월 26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
 - * 정규직 대체인력으로 연장계약 될 수 있음.
- 보 수 :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
- 근무시간 : 근무표에 따름
-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, 4대 보험 가입

4. 선발방법

- 1차 전형 : 서류심사(예정인원의 3배수, 동점자 전원 합격)
- 2차 전형 : 면접심사(예정인원의 1배수,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,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)

5. 채용일정 등

○ 채용일정 계획

지원서접수	서류심사	서류발표	면접심사	예비발표	최종발표	채용예정일
'23.6.5.(월) ~'23.6.19.(월)	6.20(화)	6.20(화)	6.21(수)	6.22(목)	6.23(금)	6.26.(월)

- 지원서 접수방법 :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(방문, 등기우편, 이메일 접수 불가)
- 접수처 : recruit.incruit.com/kotsa
- 합격자 발표 :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(문자 및 이메일)

6. 제출서류 (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)

-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 증빙서류* 1부(해당자에 한함)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** 1부(해당자에 한함)
*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
*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
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사외교육 수료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입사지원서에 “교육사항”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
-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
-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
- 최종학력증명서(또는 졸업예정증명서)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
※ 입사지원서에 “교육사항”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
-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(합격예정자 선정시 원본 제출)

7. 기타사항

- 경력기간, 자격증 취득일,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.
-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·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,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,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.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(가점제외)의 5% 또는 10%를 우대 적용합니다. (단,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)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(가점제외)의 5%를 우대 적용합니다.

-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지원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처 강화신 대리 : ☎ 054-459-7826)

2023년 6월 5일

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장

【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: 실무원-보안】

채용분야	보안	분류 체계	대분류	11.경비·청소
			중분류	01.경비
			소분류	01.경비·경호
			세분류	01.보안
공단주요사업	‘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.’ 비전을 가지고 육상, 항공, 철도 등 교통 전 분야에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종 도로·철도·항공교통안전 관리, 자동차검사, 자동차 성능시험 및 연구, 교통정보서비스,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지원,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			
핵심책무	공단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및 순찰활동, 출입통제, 사건사고 대처			
직무수행내용	(경계방비)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에 따라 경비대상시설 및 경비구역 경계 및 방비 활동 (출입통제)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문목적과 소속,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, 장부에 기재한 후 인력 및 차량 출입 허용 (순찰활동) 정해진 점검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순찰안전점검 수행 (사건사고 대처) 침입사고 및 화재사고, 재난사고 등 발생 시 대응메뉴얼에 따라 조치 시행 (보고문서 관리) 지시사항 파악 및 전달, 경비근무 기록 등 보고 및 문서 작성 (기타사항) 업무분장, 기타 지시받은 사항 등 공단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			
전형방법	서류전형 → 면접전형			
일반요건	연령	무관		
	성별	무관		
교육요건	학력	무관		
	전공	무관		
필요지식	시설의 특성에 관한 지식, 고객 요구사항에 관한 지식, 감시장비 및 통신장비 사용요령에 관한 지식, 경비업무의 이해, 순찰시 점검요소 및 방법의 이해, 방범시스템 등의 운용방법에 대한 지식, 상황별 조치요령,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 연락방법, 거동수장사 발견시 질문검색 요령			
필요기술	경계업무수행능력, 보고 및 신고 수행능력, 경비업무의 이해능력, 상황전파 및 대피유도 능력, 보안장비운용기술, 안전사고 관련 법규 이해능력 등			
직무수행태도	고객지향적 태도, 친절한 태도, 객관적인 경비업무수행 태도,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, 신속·정확하게 대응하는 자세, 근무규정 및 지침 준수 등			
필요자격	해당사항 없음			
직업기초능력	문제해결능력, 의사소통능력, 정보능력, 수리능력, 자원관리능력, 조직이해능력, 기술능력			
참고사이트	www.ncs.go.kr 홈페이지→ NCS·학습모듈 검색			

1. 서류심사

구 분	합계	성적 및 교육사항	자격증	자기소개서	우대 및 가점
실무원	100	30	10	60	장애인 : 5점 취업지원대상 : 5-10점

2. 면접시험

구 분	합계	전문성/역량	인성/태도	우대 및 가점
실무원	100	50	50	장애인 : 5점 취업지원대상 : 5-10점

3. 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표

구 분	일 반 자 격	배 점
실무원	정보처리/워드프로세서/세무회계/자동차검사/자동차정비 /건설기계정비/건설기계설비/농업기계/컴퓨터활용능력	기사 : 3점 산업기사 : 1점 1급 : 2점 2급 : 1점
공통	한국어능력시험(KBS)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	1급 : 3점 2급 : 2점 3급 : 1점

※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,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

4. 자기소개서 채점기준

평가기준	배점		채 점 기 준				
	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	성과도출	(10)	10	8	6	4	2점
	자기주도	(10)	10	8	6	4	2점
어려움 극복과 성과 도출 경험	성과도출	(10)	10	8	6	4	2점
	자기주도	(10)	10	8	6	4	2점
공단 지원 동기와 비전	성과도출	(10)	10	8	6	4	2점
	자기주도	(10)	10	8	6	4	2점

6. 성적 및 교육사항 반영기준

구분	점수 부여 기준	비고
학교교육	직무 관련 전공과목 이수학점 당 2점	사외교육은 수료증 발급 교육에 한함
사외교육	직무 관련 교육 10시간 당 1점	

※ 사외교육 수료증은 면접 시 확인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☒ 있음 ☐ 없음 ☐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
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,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- 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- 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- 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- 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 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☒ 해당 ☐ 비해당 ☐

- 1 2 4-1 4-2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☒ 해당 ☐ 비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년 월 일

지원분야 : 지원자 성명 : (서명)